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용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28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11
1. 농업진흥지역 내 농용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
3. 회 부 일 : 2024. 8.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활용 가능한 토지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읍내처럼 변화한 곳이나 해당 지역 외곽에 판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이는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하여 한번에 농용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농민의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음.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업진흥지역 내 농용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농업인 주택 등의 설치 등 일부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예외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 ----- -----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1. ----- ----- ----- ----- -----.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2. ----- ----- -----

현행	개정안
시설의 설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3. ----- -----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개정안 관련 국회 심사 경과

개정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먼저, 21대 국회에서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사유에 농약등 판매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22대 국회에서도 농약등 판매시설 또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예외사유에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관련 개정안 국회 심사 경과]

구분	대표발의	제안일자	상정	소위원회
21대 국회	엄태영의원(농약등)	2024. 01. 19.	-	-
22대 국회	송석준의원(농약등)	2024. 06. 14.	2024. 8. 26.	2024. 8. 26.
	이병진의원(농용자재)	2024. 08. 02.	미상정	-
	송석준의원(농기자재)	2024. 09. 04.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2024년 연말까지 농지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추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업진흥구역은 영농 기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역으로 시설 설치 허용은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음.

현재 농용자재 판매시설은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도 설치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의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행위 허용은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다. 검토의견

「농지법」 제28조제1항1)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②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됨.

1)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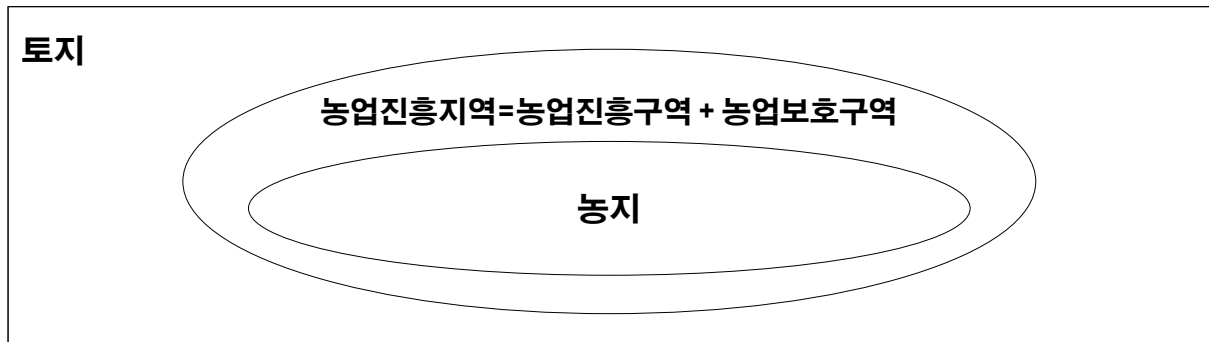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구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비교]

구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평야지 10ha이상, 중간지 7ha이상, 산간지 3ha이상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 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에 필요한 저수지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허용 행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미곡종합처리장, 육종 시험·연구시설, 농어업인주택, 농업기계수리시 설, 농산어촌체험시설 및 도로, 철도 등 공공시 설 등 설치	진흥구역 전용행위 + 관광농원사업, 주말농 원사업 등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시
행령²⁾에 따르면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사용하는 농기계수리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한 반면,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업생산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진흥구역에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상대피시설<후략>

서 농업인 등이 농기계수리시설 등에 방문하면서 농용자재를 함께 구매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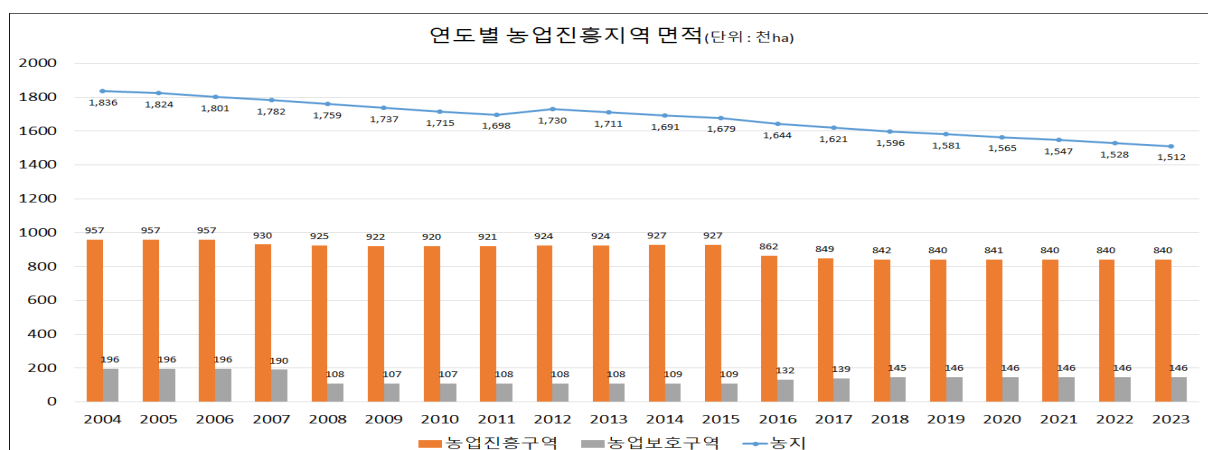
다만, 농업진흥구역은 경지 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최근 10년간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의 면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10년간 연도별 농업진흥지역 면적 현황]

(단위 : 천ha)

구분 연도	농지면적	농업진흥지역 농지 면적		
		계	진흥구역 농지	보호구역 농지
2013	1,711	811	755	56
2014	1,691	810	754	56
2015	1,679	780	705	75
2016	1,644	777	700	77
2017	1,621	778	698	80
2018	1,596	776	696	80
2019	1,581	776	696	80
2020	1,565	773	693	80
2021	1,547	769	690	79
2022	1,528	766	687	79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와 제출자료('24.9.13)



또한, 농용자재판매시설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인접한 농업보호구역에도 설치³⁾가 가능한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용자재판매시설 설치 관련 근거]

「농지법 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농수산업 관련 시설(제25조의2 관련)」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5. <u>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제조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u>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미만

문 의 처

02)6788-5414

3) 현재 설치된 농약판매업체는 총 5,683개소로 파악되고, 농자재판매장의 수는 파악이 어려움.